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3년 1월 일
발 의 자 : 백철현 의원 외 3인

1. 개정이유

○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와 그 밖에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“폐질등급”을 “장애등급”으로 수정함(안 제5조제1항)

○ 그 밖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35조,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,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

1) 개정규칙안 : 붙임

2) 신・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폐질등급”을 “장애등급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각호의 1에”를 “각호의 어느 하나에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제4조 제1항 제2호의 “장애”라 함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에 규정된 “폐질등급”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다.	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----------“장애등급”----------.
제6조(보상금의 청구)① (생 략)	제6조(보상금의 청구)① (현행과 같음)
1.~2.(생 략)	1.~2.(현행과 같음)
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,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〔별지 제1호 서식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을 경유하여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.	②----------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----------.
제9조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) ① (생 략)	제9조(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②----------각호의 어느 하나에 ----------.
제13조(심의회 회의) ① (생 략)	제13조(심의회 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②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